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직에 미친 영향 분석

고 영 우*[1)]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Workplace Panel Survey: WPS)』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해당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근로자 및 이직자수 현황, 사내 복리후생제도 실시 현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현황 및 이직자수 현황에는 지방이전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성별 근로자수 변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하청/용역 근로자수가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면서 사내 복리후생제도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주거비보조, 식사비보조, 보육지원, 통근비용 등의 제도는 시행비율이 증가한 반면, 자녀학비보조, 자기계발 지원, 근로자상담 등의 제도는 시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중차분법

Ⅰ. 서론

최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정부는 2003년부터 진행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를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설정할 것임은 분명하게 보인다.

2003년 6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로부터 공식화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이 시행된 지 15년이 넘어서고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은 정부 성격에 따라 강약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153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른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시즌1은 적어도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핵심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다양하고, 인

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프라의 균형, 산업과 기업의 균형, 권한과 책임의 균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재의 확보-양성-배치의 균형이라는 이른바 휴먼웨어의 지역간 균형,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지방의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정책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지방의 우수 인력을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해당 공공기관 조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등을 제시하고, Ⅱ장에서는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를 정리한다. Ⅲ장에서는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그리고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물리적 이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관이 협력 가능한 혁신 환경으로 지역을 재조성함으로써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종합발전을 촉진하려는 거시적인 목표 하에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도별 배치기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409개 중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34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기관[1]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여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16조에 따르면 ①중앙행정기관, ②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③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④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⑤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⑥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5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최종 153개로 조정되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이 총 115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 19개, 그 외 각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기관이 19개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유형별로는 정부 소속기관이 44개, 공기업 16개, 준정부기관 48개, 기타공공기관 45개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과 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능군별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각 혁신도시들은 지역별 중점 기능군의 분류에 따라 해당 기능군에 속하는 공공기관들이 이전배치되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능군의 구분과 무관하게 배치된 경우도 존재한다.

<표 1> 이전대상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현황

시·도	기능군	이전 기관		
부산 (13)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대구 (11)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중앙신체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광주 전남 (16)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국립전파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울산 (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 (12)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 (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북	국토개발관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경북 (12)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조달청 조달품질원 우정사업조달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남 (11)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등	중앙관세분석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국방기술품질원
제주 (9)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글로벌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개별 이전 (21)		질병관리본부(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오송) 경찰대학(아산) 국립특수교육원(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아산) 국방대학교(논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산림항공본부(원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중앙119구조본부(대구)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한국중부발전㈜(보령) 한국서부발전㈜(태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익산)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재외동포재단(제주)
세종시 (19)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순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153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 완료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3~2015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122개 기관의 이전이 해당 기간동안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혁신도시의 물리적 조성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2018년 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18년 3월 혁신도시 발전추진단(국토교통부)이 출범하였다. "혁신도시 시즌2"는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 연구

가. 2012년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2012년 이전 시기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효과를 예측, 추정하려는 내용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주성재(2003)는 해외 12개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각각 신행정수도 건설, 정부부처의 분산 이전, 공공기관 이전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사례에 대한 유형별 검토를 통해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김영덕・조경엽(2006)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다지역・다부문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효율성, 형평성 측면에서의 예측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송가영・김의준(2007)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교준・조광래(2008)는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기업이전의 생산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2013년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3년 이후부터는 이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지방이전이 지역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개인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은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설문지 분석을 통해 각 기관의 R&D 사업 발주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이전 전과 후의 공공기관 R&D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기관 이전현황, 직업 이주실태, 지역활성화 요과, 업무효율성 변화,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성과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기반 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민곤 외(2017)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오민지 외(2017)는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공무원의 생활변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부처의 이전으로 인한 생활변화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허준영・이건(2015)은 세종시 이전이라는 근무지 변경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일과 삶의 불균형이 직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조경호·김형성(2017)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둔 연구를 수행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한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 이슈들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김재환(2017)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현황과 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의를 검토하였다. 류장수 외(2013)는 당시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류장수 외(2015)는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청년 채용 실태와 확대 방안이 핵심 주제이지만, 그 내용 속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Ⅲ. 실증 분석

이상의 논의로부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이전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또는 종사자의 가족) 개인 차원에서는 거주지 및 통근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직장의 지방이전이 이직경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차원에서는 효율성 및 성과 등이 저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전 공공기관 조직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이하 WPS)」(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사업체 대상 조사를 활용하여, 지방이전 기관이 이전 시점 전후로 비이전 기관에 비해 근로자수 및 이직자수, 사내복지제도 등에 유의미한 변화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석 방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해당 조직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변화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근로자수, 이직자수, 사내복지제도 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성 변수들과 지방이전 여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전통적인 회귀분석 모형이 적절하다. 이 경우 지방이전 여부 변수의 회귀계수는 여타 기업특성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회귀모형을 OLS방법으로 추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인해 관측되지 않아 독립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한 여타의 기업 특성들(이른바 개별 기업의 비관측 이질성) 때문에 오차항이 독립변수들(혹은 그 중의 일부)과 상관관계를 보일 경우, 즉 독립변수들(혹은 그 중의 일부)이 내생성(endogeneity)을 가질 경우, 그 회귀계수들에 대한 OLS추정치는 일치추정치(consistent estimator)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상이 명확하게 구별되며 자료가 패널자료라는 점을 활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이하 DID)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

본 분석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WPS)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한국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패널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적자원관리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및 임금교섭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격년으로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5~2019년 까지 격년으로 이루어진 1~8차년도 (학술대회용) 버전의 WPS 자료를 활용하였다.

행정자료 결합을 통해, 이전 대상 153개 공공기관 중 WPS 조사표본으로 포함된 사업체를 식별하였다.[2] 1~8차에 걸쳐 조사된 WPS 공공부문 사업체 표본 292개 중 이전 대상 기관은 95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동안 지역 이전이 확인된 33개 공공기관이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활용되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조사된 기간동안 지역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191개 사업체가 비교집단(control group)으로 활용되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근로자 현황과 사내복지제도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로자 현황은 기본적으로 전체 근로자수의 변화가 있었는지와 이직자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직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를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형태에 따라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 등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근로자 현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내복지제도를 활용(도입)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차분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 규모, 노조유무, 본사여부 등의 통제변수를 활용하였다.

3. 분석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비해 근로자수 및 사내복지제도에 발생한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2>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체 근로자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3] 전체 근로자수 및 성별 근로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통

2)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WPS 자료와 이전대상 공공기관 리스트를 결합하는데 도움을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팀에 감사드린다.

3) <표 2>에는 본 연구에서 관심있는 지방이전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만을 제시하고, 전체 추정결과는 부

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남성 근로자는 증가시키고 여성 근로자는 감소시키는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해당 기관의 근로자수 현황에 성별로 상이한 차이를 발생시켰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근로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

	전체	남성	여성
지방이전	-13.578	24.331	-37.909
결정계수	0.336	0.307	0.332
표본수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표 3>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해당 기관의 이직자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앞선 전체 및 성별 근로자수 변화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직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의 변화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추정되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자는 증가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지방으로 근무지(또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 시점을 전후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직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

	전체 이직자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지방이전	4.327	11.983	-7.656
결정계수	0.208	0.182	0.15
표본수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표 4>는 자발적 이직자수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였을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정한 결과이다.[4]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자발적 이직자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추정되지 않았다. <표 4>의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고용형태별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미친 영향은 다소 상이한 것으

표로 제시하였다. 이후 모든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4) WPS에서 자발적 이직자수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한 설문은 2015년 이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2015~2019년까지 3개년(격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로 유추 가능하다. 전일제 정규직은 다소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파트타임 등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대상 기간 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증가는 해당 정책의 효과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의 이직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결과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이직을 더 하게 되는 효과를 야기했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자발적 이직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

	전일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
지방이전	-9.357	53.084	35.121	9.245
결정계수	0.176	0.142	0.181	0.183
표본수	275	275	275	275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표 5>에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면서 해당 기관의 간접고용 근로자수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기관 내 근로자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와는 달리,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큰 변화를 야기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청/용역 근로자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이전을 통해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 등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량이 상당히 큰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이전을 통해 업무방식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표 5>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간접고용 근로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

	합계	파견	하청/용역	일용	특수고용 (독립도급)
지방이전	89.933**	-13.356	103.969***	-1.022	0.342
결정계수	0.111	0.061	0.103	0.03	0.053
표본수	914	914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표 6>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내 복리후생제도 시행여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WPS에는 16개의 사내 복리후생제도 운영여부를 질문하고 있는데, 이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4개 제도는 시행이 증가하고, 3개 제도는 시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비보조, 식사비보조, 보육지원, 통근 비용 등의 제도는 시행비율이 증가한 반면, 자녀학비보조, 자기계발 지원, 근로자상담 등의 제도는 시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및 자녀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 모두가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 바, 이전 지역에서의 주거비 및 늘어난 통근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육지원의 증가 역시 유사한 사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기계발 지원 및 근로자상담 제도의 시행률이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시행이 미진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내 복리후생제도 변화에 미친 영향

	지방이전	결정계수	표본수
주거비보조	0.106*	0.237	914
건강보건에 관한 비용 지출	0.042	0.087	914
식사비보조	0.139**	0.191	914
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	0.073	0.113	914
보험료지원	0.049	0.111	914
경조비	0.057	0.129	914
저축장려금	-0.016	0.058	914
자녀학비보조	-0.165***	0.12	914
사내복지기금	0.054	0.3	914
보육지원	0.158**	0.204	914
간병휴업제도	-0.056	0.079	914
근로자휴양	0.022	0.197	914
종업원지주제	-0.004	0.043	914
통근 비용	0.194***	0.192	914
자기계발 지원	-0.117*	0.139	914
근로자상담	-0.157***	0.078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Ⅳ. 결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혁신도시의 물리적 조성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혁신도시 시즌2”는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혁신도시 정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시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WPS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해당 조직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를 근로자 및 이직자수 현황, 사내 복리후생제도 실시 현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현황 및 이직자수 현황에는 지방이전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성별 근로자수 변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하청/용역 근로자수가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면서 보조(지원)적 성격의 업무를 상당히 외주화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면서 사내 복리후생제도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주거비보조, 식사비보조, 보육지원, 통근 비용 등의 제도는 시행비율이 증가한 반면, 자녀학비보조, 자기계발 지원, 근로자상담 등의 제도는 시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및 자녀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 모두가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 및 통근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분석에 활용된 이전 공공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추정된 통계량의 신뢰도가 낮아진 경향이 발생하였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WPS 표본에서 식별된 사업체수는 95개로 적지 않은 수치였지만,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중에 지방이전이 이루어진 기관수는 33개에 불과한 것으로 식별된 바, 다양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처치집단의 표본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이전시점과 조사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진단하여 최대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표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사관리제도 및 인적자원의 활용,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이전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구교준・조광래(2008),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42(3): p.333-350.

국회예산정책처(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김민곤・박지형・송용찬(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p.335-366.

김영덕・조경엽(2006),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연구』 54(2): p.143-184.

김재환(2017),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슈와 논점』.

류장수・김종한・박성익・조장식・이근호(2015),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청년 채용 실태와 확대 방안』, 부산광역시.

류장수・박성익・김종한・조장식・곽소희(2013), 「공공기관의 지방 인재 채용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산업관계연구』 23(3): p.119-143.

송가영・김의준(2007),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가 및 지역 생산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8(3): p.1-12.

오민지・안선민・이수영(2017),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상사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3): p.83-111.

조경호・김형성(2017),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4): p.237-260.

주성재(2003),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지역연구』 19(2): p.187-2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준영・이건(2015), 「근무지 변경에 따른 공무원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시 이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3): p.65-90.

<부표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근로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

		전체	남성	여성
지방이전		-13.578	24.331	-37.909
본사여부		169.328	178.675*	-9.347
노조유무		191.232	168.161	23.071
연도 (기준= 2005년)	2007년	-196.836	-132.147	-64.689
	2009년	-168.475	-101.852	-66.623
	2011년	-176.875	-125.143	-51.732
	2013년	-166.848	-161.405	-5.443
	2015년	-185.312	-175.424	-9.888
	2017년	-192.095	-215.51	23.416
	2019년	-6.72	-58.799	52.08
이전대상여부		434.107***	219.119	214.987***
산업 (기준=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16.093	404.899	11.19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236.203	5.584	230.619
	건설업	425.363	223.823	201.54
	도매 및 소매업	388.241	105.475	282.766
	운수업	2265.389***	2101.397***	163.99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4.973	-33.218	128.192
	금융 및 보험업	1427.510***	519.045	908.4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8.588**	908.432*	300.1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2.31	48.934	93.3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69.013	176.86	192.1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699	-125.227	77.528
	교육 서비스업	444.921	174.557	270.364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4.92	-216.308	371.2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07.443	235.355	572.088***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439.826	167.729	272.097
규모 (기준= 10인미만)	10~19인	1096.449	1231.743	-135.294
	20~49인	997.6	1203.99	-206.39
	50~99인	1124.198	1218.511	-94.313
	100~299인	1347.851	1376.028*	-28.177
	300~499인	1398.628	1402.503*	-3.875
	500인이상	2754.215***	2354.946***	399.269
상수항		-1626.462	-1460.910*	-165.552
결정계수		0.336	0.307	0.332
표본수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직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

		전체 이직자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지방이전		4.327	11.983	-7.656
본사여부		5.301	-19.049	24.349
노조유무		-5.876	-19.477	13.601
연도 (기준= 2005년)	2007년	-8.147	-25.384	17.237
	2009년	-20.448	-9.76	-10.688
	2011년	-20.521	-15.36	-5.161
	2013년	-8.336	12.322	-20.658
	2015년	-56.776	-27.993	-28.783
	2017년	27.201	15.17	12.03
	2019년	-4.62	2.259	-6.879
이전대상여부		77.022**	13.552	63.470***
산업 (기준=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87.854*	40.86	-228.71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68.635	116.289	-184.924*
	건설업	-82.317	81.477	-163.794**
	도매 및 소매업	-33.428	110.592*	-144.020*
	운수업	-137.404	62.72	-200.12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3.049	79.315	-192.364**
	금융 및 보험업	126.235	143.935***	-17.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6.375	101.935*	-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1.594	83.295	-184.88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1.86	105.355*	-177.2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1.464	78.788	-210.251***
	교육 서비스업	-34.716	96.104*	-130.81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4.141	99.406*	-173.5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0.006	272.510***	-132.504*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53.034	101.107*	-154.141**
규모 (기준= 10인미만)	10~19인	-68.99	-28.322	-40.668
	20~49인	-101.444	-42.937	-58.507
	50~99인	-57.815	-29.053	-28.762
	100~299인	-27.541	-12.46	-15.081
	300~499인	-26.854	2.66	-29.514
	500인이상	176.834	107.258	69.576
상수항		117.587	-53.03	170.617
결정계수		0.208	0.182	0.15
표본수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자발적 이직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

		전일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
지방이전		-9.357	53.084	35.121	9.245
본사여부		0.078	-34.367*	-16.225*	2.985
노조유무		3.326	-18.263	1.482	-3.117
연도 (기준=2005년)	2017년	18.960**	23.475	-2.834	-0.383
	2019년	7.568	10.598	7.725	-1.097
이전대상여부		31.127	-53.292	-8.384	-11.243
산업 (기준=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8.857	-10.397	-23.448	-1.34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11.555	38.429	2.069	-1.428
	건설업	-2.424	-6.036	-9.323	-1.069
	도매 및 소매업	8.332	29.171	28.303	6.16
	운수업	-11.125	-16.444	-15.657	-5.7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511	-13.556	-20.149	0.144
	금융 및 보험업	24.807	5.778	47.401**	-3.8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65	-6.567	45.641	-3.9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969	-12.853	-15.747	-0.8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526	2.195	-4.02	-1.3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077	8.629	-18.01	0.427
	교육 서비스업	-0.78	-14.602	5.96	-1.48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749	-15.405	-1.355	-0.3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739	148.946***	34.451	20.490***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규모 (기준=10~19인)	20~49인	-2.624	-9.307	-14.616	3.407
	50~99인	-3.235	-27.771	-24.605	3.494
	100~299인	-6.185	-12.727	-8.831	4.902
	300~499인	-1.2	3.466	-4.844	6.041
	500인이상	31.846	44.609	19.885	9.764
상수항		-9.058	22.629	17.642	-2.793
결정계수		0.176	0.142	0.181	0.183
표본수		275	275	275	275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간접고용 근로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

		합계	파견	하청/용역	일용	특수고용 (독립도급)
지방이전		89.933**	-13.356	103.969***	-1.022	0.342
본사여부		4.412	-12.924	14.632	3.677	-0.973
노조유무		17.838	11.748	11.423	-6.022	0.689
연도 (기준= 2005년)	2007년	-30.382	-62.827***	50.129**	-16.366*	-1.318
	2009년	-78.827**	-59.406***	-5.119	-16.174*	1.872
	2011년	-56.001*	-60.041***	18.171	-15.594	1.463
	2013년	-62.408*	-56.050**	9.662	-16.925*	0.906
	2015년	-91.533***	-63.038***	-10.134	-17.306*	-1.055
	2017년	-43.585	-63.134**	36.179	-16.21	-0.419
	2019년	-84.059**	-70.462***	4.866	-16.665	-1.797
이전대상여부		-1.398	7.766	-5.143	-1.832	-2.189
산업 (기준=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83.375	61.678	-3.384	21.995	3.08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94.023	41.863	35.819	14.957	1.385
	건설업	85.36	41.294	28.696	13.5	1.87
	도매 및 소매업	129.488	56.823	44.617	26.586	1.463
	운수업	217.762**	139.526**	73.645	3.415	1.1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9.648	36.037	17.366	13.164	3.081
	금융 및 보험업	68.119	33.006	21.911	10.155	3.04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788	96.148	21.832	8.245	6.5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7.537	33.965	33.35	14.928	5.29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9.078	27.84	86.753	11.84	2.6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1.64	38.7	-9.235	18.162	4.013
	교육 서비스업	91.063	39.686	33.625	15.037	2.71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5.858	14.522	28.678	11.369	1.2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7.195*	38.748	64.228	50.845*	13.374***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77.139	40.904	17.328	15.331	3.576
규모 (기준= 10인미만)	10~19인	105.056	76.483	33.126	-3.728	-0.826
	20~49인	98.619	71.954	29.117	-0.545	-1.907
	50~99인	99.664	78.679	21.571	1.89	-2.476
	100~299인	103.395	88.787	7.729	6.176	0.703
	300~499인	112.966	100.177	7.693	7.239	-2.143
	500인이상	242.156	130.822	89.551	20.68	1.102
상수항		-153.495	-76.356	-70.684	-4.64	-1.815
결정계수		0.111	0.061	0.103	0.03	0.053
표본수		914	914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5>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내 복리후생제도 변화에 미친 영향

		주거비보조	건강보건에 관한 비용 지출	식사비보조	문화·체육·오락 비용 보조
지방이전		0.106*	0.042	0.139**	0.073
본사여부		0.118***	-0.027	0.029	-0.102***
노조유무		0.102**	-0.005	0.081*	0.038
연도 (기준=2005년)	2007년	-0.036	0.027	0.043	-0.047
	2009년	-0.012	-0.079*	-0.019	-0.110*
	2011년	-0.134**	-0.200***	-0.181***	-0.316***
	2013년	-0.106**	-0.140***	-0.187***	-0.248***
	2015년	-0.200***	-0.143***	-0.337***	-0.217***
	2017년	-0.214***	-0.169***	-0.416***	-0.229***
	2019년	-0.225***	-0.138***	-0.350***	-0.172***
이전대상여부		-0.005	0.025	-0.110**	0.04
산업 (기준=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39	-0.117	0.031	0.24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0.06	0.044	0.029	0.562**
	건설업	-0.092	-0.049	-0.169	0.195
	도매 및 소매업	-0.282	-0.221	-0.219	0.079
	운수업	-0.286*	-0.163	-0.275*	0.2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483***	-0.223	-0.14	0.203
	금융 및 보험업	-0.004	-0.088	-0.318**	0.1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25	-0.191	0.038	0.1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04	-0.185	-0.131	0.22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373**	-0.301**	-0.24	-0.0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91	-0.240*	-0.269*	0.184
	교육 서비스업	-0.249	-0.246*	0.093	0.23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253*	-0.196	0.039	0.1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96	-0.096	-0.305**	0.164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0.281*	-0.259*	-0.139	0.199
규모 (기준=10인미만)	10~19인	-0.412	0.208	-0.283	-0.177
	20~49인	-0.152	0.309	-0.071	0.102
	50~99인	-0.232	0.486**	-0.07	0.213
	100~299인	-0.048	0.471**	-0.072	0.216
	300~499인	-0.101	0.432*	-0.056	0.198
	500인이상	0.124	0.491**	0.058	0.382
상수항		0.584**	0.613**	0.937***	0.301
결정계수		0.237	0.087	0.191	0.113
표본수		914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5>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내 복리후생제도 변화에 미친 영향(계속)

		보험료지원	경조비	저축장려금	자녀학비보조
지방이전		0.049	0.057	-0.016	-0.165***
본사여부		-0.018	0.006	-0.001	-0.033
노조유무		0.113***	0.102**	0.014	0.022
연도 (기준= 2005년)	2007년	0.083	0.039	0.004	-0.006
	2009년	0.034	0.037	0.037**	-0.127***
	2011년	-0.162***	-0.079	0.001	-0.138***
	2013년	-0.113**	-0.158***	-0.015	-0.108**
	2015년	-0.227***	-0.178***	-0.001	-0.134***
	2017년	-0.242***	-0.285***	0.025	-0.202***
	2019년	-0.240***	-0.319***	0.018	-0.219***
이전대상여부		-0.014	-0.056	-0.011	0.026
산업 (기준=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63	0.045	0.006	0.0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0.047	-0.314	0.017	0.123
	건설업	-0.218	-0.04	0.065	0.047
	도매 및 소매업	-0.058	-0.117	0.021	-0.174
	운수업	-0.14	0.007	0.027	-0.2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249	-0.118	0.02	-0.183
	금융 및 보험업	-0.094	0.052	0.029	-0.0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198	-0.066	0.018	-0.1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176	-0.134	0.071	-0.1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235	-0.151	0.019	-0.0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81	-0.037	0.025	0.012
	교육 서비스업	-0.245	-0.168	0.016	0.02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249	0.053	0.036	0.0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53	-0.142	0.008	-0.061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0.25	-0.098	0.017	-0.113
규모 (기준= 10인미만)	10~19인	-0.295	-0.158	-0.336***	0.042
	20~49인	-0.119	-0.089	-0.336***	0.368
	50~99인	-0.122	-0.242	-0.340***	0.396*
	100~299인	-0.057	-0.179	-0.347***	0.398*
	300~499인	-0.065	-0.268	-0.347***	0.416*
	500인이상	-0.024	-0.213	-0.325***	0.379*
상수항		0.576*	1.050***	0.311***	0.593**
결정계수		0.111	0.129	0.058	0.12
표본수		914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5>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내 복리후생제도 변화에 미친 영향(계속)

		사내복지기금	보육지원	간병휴업제도	근로자휴양
지방이전		0.054	0.158**	-0.056	0.022
본사여부		0.078**	-0.059*	-0.004	0.084**
노조유무		0.139***	0.039	0.02	0.197***
연도 (기준= 2005년)	2007년	0.014	0.072	-0.016	0.018
	2009년	-0.069	-0.002	0.032	0.074
	2011년	-0.065	0.088*	0.019	-0.155***
	2013년	-0.026	0.049	0.008	-0.128**
	2015년	-0.046	0.06	0.115***	-0.088
	2017년	-0.086	-0.027	0.052	-0.107*
	2019년	-0.091*	-0.04	0.094**	-0.108*
이전대상여부		-0.013	-0.084*	0.003	-0.033
산업 (기준=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249*	0.062	0.064	0.1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0.501**	-0.286	0.545***	0.252
	건설업	0.360**	-0.035	0.141	0.211
	도매 및 소매업	0.213	-0.112	0.124	-0.104
	운수업	0.102	-0.159	0.115	0.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133	-0.206	0.131	0.028
	금융 및 보험업	-0.032	-0.035	0.121	-0.0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11	0.161	0.073	0.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59*	-0.04	0.052	-0.04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21	-0.310**	0.056	0.12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87	-0.013	0.069	-0.105
	교육 서비스업	-0.284*	-0.044	0.045	-0.264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381***	-0.08	0.02	-0.1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23	-0.044	0.051	-0.122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0.182	-0.078	0.008	-0.242
규모 (기준= 10인미만)	10~19인	0.147	-0.355	0.01	-0.128
	20~49인	0.265	-0.343	0.031	0.008
	50~99인	0.238	-0.326	0.058	0.012
	100~299인	0.361	-0.202	0.057	0.043
	300~499인	0.414*	-0.072	0.108	0.039
	500인이상	0.511**	0.123	0.168	0.191
상수항		-0.038	0.476*	-0.082	0.336
결정계수		0.3	0.204	0.079	0.197
표본수		914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5>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내 복리후생제도 변화에 미친 영향(계속)

		종업원지주제	통근 비용	자기계발 지원	근로자상담
지방이전		-0.004	0.194***	-0.117*	-0.157***
본사여부		-0.006	0.022	0.026	0.043
노조유무		-0.012	0.061	0.084*	0
연도 (기준= 2005년)	2007년	-0.007	-0.051	-0.029	0.091*
	2009년	0.025*	-0.077	-0.059	-0.033
	2011년	-0.018	-0.170***	-0.198***	-0.014
	2013년	0.012	-0.209***	-0.174***	-0.062
	2015년	-0.014	-0.192***	-0.210***	0.044
	2017년	-0.002	-0.337***	-0.293***	0.031
	2019년	-0.005	-0.321***	-0.209***	0.043
이전대상여부		-0.02	-0.122***	0.190***	-0.063
산업 (기준=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52	0.125	0.381**	0.41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0.065	-0.621***	0.406*	0.340*
	건설업	-0.081*	-0.328**	0.282*	0.356**
	도매 및 소매업	-0.078	-0.217	0.069	0.351**
	운수업	-0.094**	-0.454***	0.031	0.29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5	-0.418***	0.14	0.285**
	금융 및 보험업	-0.031	-0.443***	0.158	0.3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78*	-0.077	0.066	0.29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53	-0.119	-0.01	0.3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81*	-0.485***	-0.108	0.3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63	-0.339**	-0.058	0.383***
	교육 서비스업	-0.055	-0.296*	-0.038	0.24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86**	-0.216	-0.074	0.2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63	-0.368**	-0.055	0.322**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0.070*	-0.265*	0.091	0.312**
규모 (기준= 10인미만)	10~19인	-0.027	-0.211	-0.314	-0.016
	20~49인	-0.02	-0.099	0.054	0.083
	50~99인	-0.014	-0.128	0.124	0.141
	100~299인	-0.011	-0.083	0.136	0.22
	300~499인	0.018	-0.08	0.126	0.223
	500인이상	0.018	0.078	0.171	0.325
상수항		0.096	0.766**	0.331	-0.327
결정계수		0.043	0.192	0.139	0.078
표본수		914	914	914	91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학술대회용) 자료.